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9. 24.(수) 17: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7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3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9차 회의의 속기록, 제4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4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42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국회에서 요구한 회의록·속기록 제출 의결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국회에서 2014년 제39차(9.1)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차수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 중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개인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2014-43-14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먼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아침 규개위 결과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설명을....

○ 최성준 위원장

- 아마 오남석 국장께서 규개위 심사 결과까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같이 보고하실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참고자료로 배포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를 참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규개위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할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내용을 말씀 드리고 말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결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금년 5월 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바 있고, 5월 16일~6월 25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9일 동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이 위원회에 보고된바 있습니다. 7월 14일~8월 4일까지 동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8월~9월까지 동법 시행령 제정안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9월 16일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바 있습니다. 오늘 동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 규개위 규제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시 제·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행정예고를 한 이후에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규개위에 제출된 안에 대해 내용을 말씀 드리고, 그다음 말미에 규개위 심의결과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

한 규정」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통위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은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입니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토록 하고,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통사는 또한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방통위 등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점·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단말기에 대하여 이통사의 공시 관련 정보 및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입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지에도 필요한 명령으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7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21일 이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입니다.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필수적 가중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토록 하였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기타 단말기 유통법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입니다. 여기에도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또 관련되는 단말기유통법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6가지 제·개정안은 오늘 오전에 규개위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따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듯이 먼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2조제4항을 삭제하라는 권고안을 규개위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3항인 것 같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3항입니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규개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시에서 재검토형 조문으로 '재검토형'이라고 적었는데 법률의 규정 자체가 3년 일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개위에서 이것 역시 일몰형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봐서도 적당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전부 재검토형 일몰 설정권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규개위에서 이와 같은 권고를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저희 고시에 이 규정을 넣게 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현재 고시에는 그 규정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들어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규개위 심사받을 때 그것을 넣어서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심사결과에 따라 이것을 바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원래 우리가 올린 원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권고사항으로 붙여 온 것입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일단 원칙적으로 규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상황 변화....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올릴 때도 그것을 붙여서 올리는 것입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조문이 있는데 규개위에서 그것을 설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상해서..., 이미 규정에 들어 있는 것을 왜 설정하라고 권고를 했는지, 이것은 이미 있으면 권고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특별히 저희가 반영할 것이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정리를 하면 다른 권고는 지금처럼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또는 상한액에 관한 규정처럼 법 자체가 효력 상실형 일몰로 되어 있어서 고시안에도 효력 상실형 일몰을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제2조제3항에 분리공시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삭제토록 권고하는 규개위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선 절차상의 문제로 규개위에 재논의나 재심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사례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적 절차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다시 요청·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오남석 국장께서 전례,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파악하기로는 야당이지만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재논의, 재심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삭제 권고이기 때문에 재심요구를 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최종 의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분리공시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상임위원들과 함께 수차례, 몇 차례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회의, 간담회에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합의한 안입니다. 이동통신의 소비자, 이용자들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하고, 정책의 고객인 국민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소비선택, 경제원칙에 따른 소비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재심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위 정책에 대해 비판은 자제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온 비판만 봐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도 제조사 전부가 아니고 특정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국민들의 이익을 희생시켜서야 되겠느냐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공정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고, 저도 지정토론자는 아니지만 발언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신 분들, 업계와 학계와 전문가들, 소비자단체까지 거의 다 참석해서 토론한 결론은 분리공시제는 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만 영업비밀 침해이다, 글로벌 마케팅에 저해된다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도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동통신사는 찬성하고 제조사는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통사 전부 다, 소비자단체 전부 다, 시민단체 전부 다 찬성하고 그리고 오로지 제조사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규제위의 억압인지, 압력인지, 의견제시인지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정부부처 간 입장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방통위와 미래부가 함께 분리공시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정부 내에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반대한다는데 산업부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정책상 산업진흥과 기업보호,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의 반대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제처의 단통법 해석도 아니고 법률 검토의견입니다.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지금까지 고시안에 대해 의견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충분히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누구 못지않은 권위 있는 법률가이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했습니다. 충분히 단통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위의 권고 결정인지, 결론인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 존립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상임위원들이 서로 다른 추천과정을 거쳐 모여서 이루어진 합의제 정책 행정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많은 고민을 했고 합의해서 만들어낸 안을 행정부 내 어느 독립부처에서 우리 정책상 그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규제위에 가서 발언해서 그것을 뒤집는다면 방통위의 존립 근거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정책문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으로 후속대책인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재심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규제법정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개위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분리공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고시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고민해서 만든 이 안을 일단 현행법제 아래에서는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행하지 않을 수 없고, 10월 1일부터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 역시 단통법의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도 중앙행정기구로서 법률제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부 정부 일원으로서 매우 어렵다면 의원입법, 아마 저는 어제 국회 정책토론회의 분위기로 보서는 야당이 당연히 할 것으로 봅니다. 거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당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주무부서로서 방통위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정부 테두리 내에서 어렵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개위의 결론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국민 중심의 정책, 고객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관철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드린 규개위의 재심요구와 함께 단통법 개정법률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는 그 추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규개위 결정내용에 대한 말씀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리하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는 재심사를 요구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상 재심사 요청이 불가능할 때에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법에 분리공시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논의해야겠다는 2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분리공시제도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규개위의 결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의견에는 기관의 의견으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제처에서 의견을 낸 것은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까, 아니면 법제처 내부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한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법제처 차장이 규개위원회의 정부 위촉위원으로 규개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규개위원장이 법제처가 거기에서 법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에 대해 법제처 차장이 법적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제처에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말기유통법의 내용과 저희가 고시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과연 상치되는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다음에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법제처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만...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 참여했기에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도 그 문제를 법령해석위원회에 정식으로 협의해서 그 절차를 밟을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저희가 법률 시행을 10월 1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시 문제도 그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법령해석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일단 물리적으로 그 날짜를 맞출 수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검토한 끝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고삼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시에서 분리공시규정 제2조제3항을 삭제하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으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우선 제가 지금 생각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규정이 있을 때, 규정이 이미 시행령이든 고시든 존재하고 있을 때 그 규정이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고시의 규정으로 의결되지 않고 안으로만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단말기유통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적법한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묻는 절차, 또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현행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이번과 같이 저희가 법에서 위임받은 고시를 제정하는 경우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후자에 해당되는데 산업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서 의견제시가 되어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부 실무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두 번째 회의부터는 법제처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법제처에 의견을 구하자, 이것이 아주 정확히 유권해석 의뢰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 의견을 의뢰하자고 해서 법제처에 의견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제처장, 그다음에 차장, 실무 국·과장으로 이어지는 독립제에서의 법해석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해석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독립제 하에서는 어떤 입장에 대해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이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좀 더 객관적인 기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법제처 산하에 있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정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를 한 번 거쳐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결론 날 것 같지 않으니깐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아침 규개위 결정에 대해 저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자 권익과 편익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훼손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대해 규제를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이통3사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도 대승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유통협회나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도 제도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규개위가 분리공시제도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보고 도입을 반대한 삼성전자, 그리고 산자부와 기재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고시에서 제외토록 권고한 것은 입법 취지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용자의 관점, 소비자 이익 관점의 정책이 실종되고, 국익으로 포장된 기업이익 중심의 정책이 정부 내에서 지배적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산업정책 주무부처가 이용자 보호업무를 핵심으로 하는 방통위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저는 산자부나 기재부가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나 논의과정을 거쳐 보조금 분리공시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인해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법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규개위를 설득하지 못한 저희 위원회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각에서만 접근해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 기재부나 산재부는 이러한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분리공시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궁극적으로 사업자들의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입니다. 이번 규개위의 결정으로 분리공시제도의 도입은 보류되었으나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 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통법에 관련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이 고시 제정 과정에서 분리공시의 도입 여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또 사무처와 수많은 토론을 하면서 저도 이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고 저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에서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께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앞에 선행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법제처 의견을 듣자는 것이 있었고, 오늘 현재 사안의 중요성을 규제개혁위원회도 감안하여 보통은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저희 안전을 심의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를 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재심사 말씀도 하셨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니까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조항에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절차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어서 혹시라도 분과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규개위에서 개선 권고한 내용을 저희가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도 분리공시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동안 제가 우리 위원회 내에서는 소수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수결에 따른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회의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분리공시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규개위 의견에 대해서 본인은 오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이었지만 전체 규개위 회의에서는 이것이 다수의견이라는 것에서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의 판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규개위가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민간위원이 17명이고 정부위원이 6명, 위원장해서 전부 24명이 참석해서 오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정부위원들만 참석한 것도 아니고 민간위원이 훨씬 더 많은 17명이나 참석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 자신으로서는 어쨌든 분리공시라는 것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오히려 다수일 수 있다, 분리공시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 대해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우려,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고, 또 분리공시가 과연 우리는 일방적으로 자꾸 이용자 측면만을 강조합니다만 분명히 이용자 측면의 보호적인 측면도 있고 방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 관해 중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리공시 문제는 이용자 측면보다는 오히려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갈등, 거기에 서로 간에 경제적 분배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누구로부터도, 또 사업체 누구로부터도 한마디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이야기도 들은바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안만을 놓고서 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분리공시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밝혔었습니다. 특정업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봅니다. 제조업체

에서도 삼성전자와 또 LG전자의 입장이 다르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LG전자는 이통사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또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분리공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규개위에서 전체회의까지 소집해서 이 문제의 타당성에 관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따른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본인의 당초 의견과 일치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규개위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 자신의 소수의견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리지 않고 전체 다수의견에 따라왔었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입법을 통해 분리공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을 규개위에 다시 우리가 재심을 논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례나 이런 정황으로 봐서 결코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의 국민 여론총과 또 언론과 학계와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하는지도 내일 아침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동통신사는 찬성하고 제조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통사 SKT, KT, LGU+는 말할 것도 없고, 제조사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빼고 LG, 팬택, 말 그대로 소비자단체 전부 다, 일반 시민단체, 서울YMCA, 학계 인사들 거의 다 정책고객, 국민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시장 지배적 기업의 주장과 그 이익, 어떻게 말씀 드리면 굉장히 많은 로비활동을 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통사들도 로비활동을 전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절대다수 기업에서도, 산업계에서도 그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말하자면 민주적 경제정책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규개위의 삭제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놓아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10월 1일 이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시행하고 그것을 그냥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규개위의 삭제권고안에 대해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의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다 보류시키게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방향을 입법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분리공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삭제권고 의견이 온 것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반성도 해 보고, 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논의를 종합하면 앞으로 분리공시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문제, 또 이 분리공시가 단말기유통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 등은 오늘

이 의결안건과는 별도로 따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권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고시를 시행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방법상으로는 이 고시를 저희가 의결하든지, 아니면 의결하지 않고 이 고시 전체를 보류하고 재심사를 하는 것이지 삭제권고를 받지 않고 나머지 고시를 시행하면 결국에는 저희 고시를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10월 1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요구했을 때 만약에 10월 1일 이전에 결론이 안 나면 그때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돼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재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결정적인 자료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 결과는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이 분리공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10월 1일부터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 삭제권고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고시안을 의결한 이후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말기유통법 자체의 그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분리공시를 명문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별도의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 그다음 법제처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검토를 후속조치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 고시들을 일단 의결하고, 그다음 차후에 다시 이 후속조치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0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단통법과 우리가 만든 여러 시행령, 고시를 안 할 수는 없고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을 하면서 다른 한편 규개위에 재심요구를 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의뢰를 정식으로 하고, 시행이 들어간 뒤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삭제권고로 저희가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재심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그것도 전례가 없어서 당연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해결방안은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으로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10월 1일부터 이 단말기유통법이 분리공시가 빠진 채로 시행되어서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 저희들이 후속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의결하고,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모아서 입법자료로 쓰든지, 아니면 분리공시 아닌 또 다른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든지 하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미 규개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이미 법제처에서도 다 참석해서 논의가 끝난 사안을 법제처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런 사안까지도 법률검토가 다 된 상황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행결과를 보면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할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논의해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로 해서 재심 부분이나 또 유권해석 부분은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현명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법제처에서 저희들 고시 중에 있는 분리공시 규정이 단말기유통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다른 법적인 견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1심 판결의 결론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듯이 법제처에서 우리나라의 법 해석의 물론 최고기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분리공시가 단말기유통법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 이외에 다른 결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후속조치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무리 없이 안착되면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고시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분리공시 삭제권고를 일단 그 대로 따라서 저희 고시 규정을 수정한 다음에 이 고시안을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는 일정한 강제를 받지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타 사례로 보면 법제처 스스로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법원에 가서 패소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의 내부 입장 정리가 결코 바꾸기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했을 때 관련 법무법인들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분리공시제도를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원회 판단에 따라 그러한 고시를 마련하는 것이 크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저도 기록으로 남겨 놓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 그 부분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디라고 지칭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리공시 결정하기 전에 외부에 법률자문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결론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분리공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일부가 지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합쳐서 전체 지원금을 형성하는데 그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일부가 공시되었을 경우에 단말기유통법 제12제1항에 단서로 되어 있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가 제조사별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어서 그것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적인 의견을 준 상당수는 그 일부로 인해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약간의 가정을 하고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대 그런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 일부가 밝혀지더라도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준 장려금의 전체 규모는 밝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와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규개위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서 수정의결하자는데 찬성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제처의 법령해석이든 유권해석이든 의뢰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 현행 고시규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는 것도 찬성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분리공시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자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률, 시행령, 방통위가 하는 고시, 미래부가 하는 고시 모두 9개인데 엄청난 내용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공시 문제뿐만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입법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리공시 문제뿐만 아니고 이 새로운 제도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리뷰해서 법률개정이 될 수도 있고, 시행령개정이 될 수도 있고, 고시 개정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제도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끝으로 저도 결론 삼아서 말씀 드리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나 법제처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기구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재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그럴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해 봤자 역시 비합리적인, 비민주적인,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인 결정이 나온다면 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원안을 만들었던 우리가 재심요구도 그렇고,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할 필요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고, 후속 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제출할 움직임을 추진하지 않겠다면 저는 정말 국민 여론층, 시민단체, 많은 소비자단체들이 나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 참석했던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전부 다 분리공시제가 필수라고 지지했고 그렇게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국민 여론층, 시민단체들이 나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매우 낭비된다, 그렇게 꼭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기구로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길을 국민들에게, 시민단체에게 그냥 짐 지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결하는 것도 아까 규개위에서 내놓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정 삭제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현행 법제 아래에서 할 수 없이 시행에 들어가고 그냥 남겨 두고 그리고 후속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시민단체들과 국민 여론층이 이해하고 납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책당국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방통위의 위상과 위신, 체면은 이미 구겨졌습니다. 언론들이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방통위의 설립취지입니다. 존립근거입니다. 여기는 진짜 합의제 정책 행정기구인데 여기에서 합의해서 어렵게 만든 것을 독임제 정부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 아까 민간위원 몇 명, 정부위원 몇 명이 했다고 하지만 저는 공식 회의를 조찬모임에서 했다, 그것도 공식회의지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원들이 얼마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알고 임했는지, 저도 대학교수할 때 많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결론이 나온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요구를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할 필요가 없다면 말하자면 일말의 기대라고 할까,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건너뛰어서 이제는 개정법률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라도 표명한 뒤에 그리고 10월 1일 새 단통법 우리의 시행령 고시를 함께 시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결하고, 그러나 거기에 부가해서 이러이런 것을 후속으로 하겠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감소시킬 수 있고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권고는 받아들이지 말고 분리공시 부분을 뺀 우리 고시안을 의결하자는 것인데 이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를 들면 삭제권고안이 내려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고 고시를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삭제한다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개위의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후속조치로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고시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하느냐 마느냐를 의결하자는 것인데 개선권고를 받아들여서 삭제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고시를 의결하려면 고시안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지우지 않고는 고시안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간 여유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빼고 새로운 의결안을 만들어서 우선 의결하고 시행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 고시 제2조제3항을 스스로 삭제하는 것보다는 삭제권고해서 일단 삭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이 없다면 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규개위의 삭제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그다음 우리가 해야 할 후속조치를 하는데 장애가 만들어지지 않는 선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 완전히 우리 스스로의 의견을 배제하자는 입장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단통법 자체가 시행되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의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분리공시의 문제가 법적으로 유권해석의 문제가 될지, 아니면 보다 더 큰 틀에서 상황의 문제가 될지,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일단 시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분리공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상향해서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눈앞에 단통법 시행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적인 갈등을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부분에 관해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시행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리공시의 문제가 과연 어느 쪽의 의견이 옳은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 결과를 보고서 분리공시가 더 필요하다면 또 그때 다시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개 고시안에 대해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장님,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것 관련해서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안은 논의하신 대로 하면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그 밑에 제2조제4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2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별지 1호, 2호의 서식 중에 이통사의 직접지원금이라는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남석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6개 고시안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잠시만요.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까지 논의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이야기지만 <붙임>에 세부 기준, 규정인데 위에 <1>번부터 <4>번까지가 고시이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6>번은 방통위 규칙입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도 고시입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다 고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도 고시입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다 고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도 고시고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1>, <2>, <3>, <4>번이 방통위 고시 제정안이고, <5>번, <6>번이 기존 고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편의상 순서에 따라 <1>~<4>번까지 고시는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5>번, <6>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하는 의안입니다. 그 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이통사 직접 지원금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결정에 관한 건 (2014-43-14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4조제1항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하였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원금의 상한액의 범위를 25만원~35만원으로 규정하고, 방통위가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한액 결정 시 고려사항은 관련 고시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현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그 밖에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한 사항들은 이통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의 장려금 추정액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10년도 평균 단말기출고가에서 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기존 상한액(27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14년도 평균 단말기출고가에 적용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상한액(27만원)을 '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 3가지를 검토한 결과, 3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3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간단히 질문만 하면 그 밑에 3가지를 고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추정액, 두 번째 2014년도 평균 단말기 출고가에 적용한 금액, 세 번째 2010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고려,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추정해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30만원에 비슷하게 수렴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30만원 플러스마이너스 1~2만원 정도...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한 1만원 범위 내에 있어서 저희가 30만 몇 천원 평균 내기도 그래서 30만원 정도가 어떤가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지원액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하게 되면 판매점에서 15%를 더 줄 수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종적으로 34만 5,000원 정도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3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저희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그 문제입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30만원으로 정하면 15% 재량권까지 포함하면 34만 5,000원까지 줄 수 있지요? 상당히 고액이네요. 현행 27만원 보조금일 때는 15% 재량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없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새 단통법에 규정된 15% 때문에 30만원만 하는 것도 이것은 엄청난 인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요구, 소비자, 이용자들의 기대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간에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가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장기적인 가계통신비 비중 인하정책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을 생각해 보니까 34만 5,000원까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통신시장의 인플레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데요. 어느 전문가 학자인데 전문가 이야기로는 아마 이통사들이 새로운 단통법이 시행되면 굉장히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으로 보조금 상한액을 정하면 이통사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것이다,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왜? 수익률, 마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통사들이 자신의 수익이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면 그 수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결국은 소비자,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한액을 높게 책정할수록 적어도 2년 뒤에는 그것이 통신비 양등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30만원 선으로 우리들 사전 토론회에서 거의 합의했고, 또 사무처 의견이 근거 있는 수치와 산출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상한액을 30만원, 또 대리점·판매점이 재량에 의해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속 보도에 나오듯이 미래부의 고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에 의해 모든 요금제에 대해 지원금 상한액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고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가요금제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김재홍 위원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모두가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적정한 금액이나, 저희가 나름 그동안 많은 고민해서 이 금액을 하자고 하는 마당이긴 하지만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의결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이렇게 꼭 앞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6개월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전장치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정한 지원금 상한액이 3년 내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에서 6개월마다 정하면 그것도 큰 혼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상한액을 가능하다면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혼란상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4-43-150 ~ 15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의 배경은 '12년 4월 웹하드 사업자 등록제 시행 이후 결제해지 제한, 회원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는 금년 3월 중에 웹하드 사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조사했고, 그다음에 4월 1일~7월 18일까지 (주)네오피플 등 10개 웹하드 사업자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9일부터 8월22일까지 웹하드 사업자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또한 8월 7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의견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웹하드 사업자 아래 박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현황입니다. 저희가 10개 사업자를 조사했는데 대상 사업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입니다. (주)네오피플

은 월 자동결제 상품 1주일 정액권을 무료로 준다는 명목으로 신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동의 없이 월 자동결제 상품에 동시에 가입시킨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판단입니다.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나목-제1호(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정 명령과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입니다. (주)디비고닷컴 등 8개 사업자는 휴대폰으로 결제했다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月)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에스투콘텐츠 등 5개 사업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고 고지하고, 실제로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거나 고지한 것과는 다르게 혜택을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사업자 및 위반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판단은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알리지 않은 행위 및 허위과장으로 고지한 행위는 각각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나목-제4호(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조치방안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행위입니다.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 등 3개 사업자는 자동결제 회원들에게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결제해지를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니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바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은 자동결제 서비스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를 못하게 한 행위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나목-제5호(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조치방안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조사대상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 기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업무처리의 절차를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첫째, 부과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 과징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의 상한액은 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를 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기준율은 정액 과징금의 경우에 저희 고시에서 중대성에 따라서 3단계로 구별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위반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봐서 3억원 이하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반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및 과실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0.1~0.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세부내역은 <붙임 2>에 있습니다. (주)네오피플은 무료 이용권을 주면서 동의 없이 자동결제 상품에 가입시켰으나, 이용권이 소멸된 후에는 이용자의 결제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부과기준율 0.1%를 적용하였습니다. 0.1%를 적용하고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감경을 고려하면 최종 금액은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주)티비이엔엠은 일정기간 자동결제 해지를 제한하였으며, 고의성과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봐서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하였습니다. 적용한 결과,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감경을 할 경우에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2,944만원, (주)티비이엔엠은 1,570만원의 과징금을 산출하였습니다. 비엔시피(주)는 해지제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주)유니크인은 회원가입 후 7일 이내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0.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엔시피(주)는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감경을 한 결과 979만원, (주)유니크인은 33만원의 과징금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주)디비고닷컴 등 8개 사업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자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으며, 단순한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주)유니크인의 경우에 과징금 33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말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한 것 중에 이 정도 금액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과징금이라고 하기가, 앞에 보고하실 때 쪽 보니까 여기가 등록일이 작년 말이더라고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조사는 4월부터 했고, 그러면 조사 대상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1월~4월까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징금 33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도 아니고 과징금인데, 그래서 얼핏 보니까 업력도 짧은데 굳이 이 경우에도 33만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기주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정명령하고 계도하고 가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33만원은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라...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비엔시피(주)도 위반행위가, 저희가 조사한 것은 동일하게 위반행위기간이 4개월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비엔시피(주)의 경우 위반기간이 1월~6월까지로 되어 있고, 매출액이 작년도 1년 매출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주)유니크인은 위반행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주)유니크인은 1월~4월까지 위반기간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비엔시피(주)는 1월~6월까지이고, (주)유니크인은 1월~4월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조사 담당관이 조사한 기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도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같은 위반을 했는데 하나는 신설회사여서, 작년 매출액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신설회사라서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형평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저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의견은 굉장히 가볍게 말씀 드렸습니다. 과징금 33만원이라는 것이...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번에 시정명령만 하고 과징금을 예를 들어 부과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시 재적발됐을 때 감경하는 데에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시정명령을 받아도 1차 위반이기 때문에 다음에 걸리면 가중사유가 됩니다. 과징금을 받든 안 받든 일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가중사유에 해당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만약에 이것을 면제해 준다면 이번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고,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다음에 재차 두 번째 걸리면 가중사유가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위반은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위반의 기록은 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별 종류를 달리 했을 뿐입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주)유니크인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자는 모두 공통으로 시정명령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행정처분, 과징금 재발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나온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면제해 준다고 해서 누범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위반사례는 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비엔시피(주)의 111억 3,500만원은 2013년도 매출액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부과기준을 0.1%를 전년도 1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곱해서 과징금을 쪽 산출해 낸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는데 그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전년도 매출액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주)유니크인은 2013년 12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이 없을 뿐인 것이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까? 지금 3억 8,200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매출액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14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이 1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곱하기 4를 해서 잠정추정매출액을, 어차피 이 매출액은 매출액 대비 부과기준율을 정한 것은 저희가 회사 규모에 따른 과징금에 차등을 두기 위해 하는 것이지, 법에 2013년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3억 8,200만원은 3개월 분이니깐 1년으로 치면 그것의 4배쯤 된다, 그렇게 산출해서 거기에 0.1%해서 최종 과징금액을 계산하면 4배가 됩니까? 그렇게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현재 사업법 시행령에는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매출액 산정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연 매출액을 환산하면 4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매출액을 환산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가지고 연매출액을 환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딱 4배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3억 8,200만원을 4배로 해서 0.1% 부과하면 같겠지요. 기준금액이 나오고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감경하면 결국 33만원의 4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과징금으로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안은 어떻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일단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사업자는 다 연 매출액으로 하면서 여기는 시작한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3개월 매출액만으로 계산하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것도 1년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추정해 놓고 거기에 0.1% 하는 것이...

○ 김재홍 상임위원

-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읽어 드린 시행령 취지를 보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 과징금을 4배 하는 것은 앞에 기준금액에서 가중하고 감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계산하기에는...

○ 최성준 위원장

-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원칙에 따라 매출액을 곱하기 4해서 거기에 10%, 20% 가중·감경해서 구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괜히 제가 금액을 올린 것 같기는 합시다만...

○ **김재홍 상임위원**

-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기준과 원칙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웹하드 사업자가 83개로 나와 있네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작년 말 기준 미래부에 등록된 사업자 수가 83개 사업자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조사한 것은 10개 사업자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자 위주로 해서 우선 10개 사업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선적으로 그냥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선정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나머지 83개 사업자도 우리가 조사한 사업자보다 예를 들어 매출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사업자들도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있을 수 있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있을 수 있는데 아마 83개 사업자 중에 큰 사업자들은 거의 10개 사업자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렇게 굉장히 불법적인 웹하드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차피 먼저 그동안에 불편사항 신고가 많이 된 것을 중심으로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한 번 더 조사를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해서 과징금 부과로 경종을 울리고, 그다음 추후에 어려우시겠지만 나머지 웹하드 사업자 중에 규모가 큰 곳은 다시 한 번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규개위 활동을 스크린하다가 발견한 언론보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SKT의 단말기 유통과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SK 네트워크,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대포폰 10만개를 가입시켜서, 불법이지요. 가입시켜서 말하자면 문제가 됐고 검찰이 대구지검이더라고요. 현지에서 2명을 구속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고 안 것입니다.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동사는 그러지 않았느냐? 또 SKT는 우리는 시장점유율 50% 이상 지키기 위해 그렇게 지시했다고 의심을 받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적극 변명인지 하여튼 반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이용자정책국장이시니까, 하나는 여권만 가지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개인정보 도용이지요. 두 번째는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역시 허위 마케팅을 했다고 할까, 부당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또는 혹시 다른 사업자는 그런 것이 없는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지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조사를 지켜보기로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개인정보를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과에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 중이라서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수시로 정보를 얻어서 비록 외국인이지만 개인정보보호는 대상이 외국인이라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0만이면 이것이 다 외국인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잘 모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구·경북지역만 10만개라면...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이동사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두 개 언론사가 아니고 최소한 제가 본 것은 4개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밖에서 이것은 '아유~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물어볼 수 있고, 잘 모른다면 방통위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거나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는 아니더라도 SKT 쪽에 자료제출 요구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빨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관련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온라인상에 일어났는지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났는지를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 소관 법률 내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꼭 지켜보고 해야 할지, 타이밍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KT 건은 경찰에서 발표하면서 저희가 사실상 조사가 시작됐고, 저희가 조사하는 동안 검찰에 송치가 됐고 수사는 계속 됐고 그런 관계라, 하여튼 저희가 일단 법률검토해 보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논을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팩트(fact)가 정해져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보도로는 예를 들어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어느 정도 팩트를 쫓으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훨씬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JTBC 단독보도의 형식으로 일부 보도가 되어서 그 보도가 더 확산되고 있고, 아직 검찰에서 공식적인 수사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수사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꼭 뒷북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직 수사 중인데 저희가 또 팩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시로 상황파악을 하면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파악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아서 그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차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상황에서는 일단 규

제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고 그것을 일차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상의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방통위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고 위원들에게 빨리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SKT의 입장이라고 할까, 설명, 해명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벌써 2명을 구속했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제가 보도 내용을 본 것으로는 SK네트웍스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다는데 SK네트웍스는 저희가 관할하는 곳이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단말기 판매유통을 하고 있는….

○ 최성준 위원장

- 거기는 미래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와서 SKT까지 오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조금 상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SKT에도 의견을 아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그쪽은 보도에 의하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 소관과 관계없이 파악을 위해 요구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바빠서 빨리빨리 정리를 못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첨언을 드리면 법률검토하시고, 사실관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빠른 시간 내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많은 분이 가시고 일부 남아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아마 유례가 없는 것 같은데 회의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면 저희가 내일 오전에 위원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내일 오전에 국가정책조정회의 일자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고시안을 확정하고 상한액을 확정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약간 무리인 줄 알면서도 5시 30분을 회의시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으로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9시 24분 폐회 】